

제 825 호
1981. 2. 17.

발행인: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
면 접: 문화공보관 김진호
전화: 75-7834
인쇄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화: 75-6090

시 보

차례

◎ 조례

제 1491 호: 서울특별시 품질관리 추진 협의회 운영조례 3

◎ 규칙

제 221 호 (교육위원회규칙): 서울특별시 국가기술자격검정평가 위원회 규칙 폐지규칙 4

제 222 호 (교육위원회규칙):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당직근무 규칙 4

제 223 호 (교육위원회규칙):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법률고문 운영 규칙 8

제 224 호 (교육위원회규칙): 서울특별시 내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 학급의 교직원수, 당직 급 및 산업체의 교육비 부담에 관한 규칙
증개정규칙 9

〈이면제 4〉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◎ 고 시

제 34 호 :	도시계획사업 (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사업) 시행허가변경	10
제 35 호 :	도시계획사업 (소매시장) 시행허가	10
제 36 호 :	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	11
제 37 호 :	도시계획사업 (주차장) 시행변경허가	12
제 38 호 :	도시계획시설 (학교, 도로) 지적승인	13
제 39 호 :	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지지정	13
제 40 호 :	도시계획고도지구지적고지	15
제 41 호 :	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지지정	15
제 42 호 :	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	17

◎ 공 고

제 36 호 :	전기용품제조업체허가취소	18
제 37 호 :	도시계획사업 (공용의 청사 도로) 실시계획공람공고	18
제 38 호 :	KS 표시허가취소처분공고	38
제 39 호 :	도시계획사업 (주차장) 일부준공공고	38
제 40 호 :	전기용품제조업체허가취소	39
제 41 호 :	전기용품제조업체허가취소	39
제 42 호 :	전기용품제조업체허가취소	40
제 86 호 (도봉구공고) :	공인개작공고	40

◎ 사 명

조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품질관리 추진현의회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⑩
1981년 2월 17일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1491 호

서울특별시품질관리추진
협의회운영조례

제 1 조 (설치) 품질관리운동의 조직
적인 추진으로 품질관리 체계를 전산업에 정착시키기 위한 관련정책을 조사, 연구, 협의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(이하 "시"라 한다)에 품질관리 추진현의회 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 2 조 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여 관련정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자문에 응한다.

1. 품질관리추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
2. 품질관리 운동제도, 계통 및 홍보협의

3. 기타 품질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탐의 및 해결 방안 모색

제 3 조 (구성)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제 1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공업파장, 신료파장과 국립공업시험원의 부장, 한국공업표준협회의 임원, 서울상공회의소의 일원 및 품질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 이 둥부한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.

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2항에 규정된 이외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임시 위원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.

제 4 조 (위원장의 직무등)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회무를 통리한다.

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5 조 (회의)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②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할 안전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협의회의 회의는 위원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 반수의

45-4 제825호 시

보 1981.2.17

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6 조 (실무협의회) ① 협의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 한다.

1. 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조사, 연구
2. 협의회 또는 그 위원장이 위임 또는 지시하는 사항의 연구, 조사 및 협의

③ 실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
제 7 조 (간사)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② 간사는 시 표준직장으로 한다.

제 8 조 (수당과 여비)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9 조 (회의록)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규 칙

서울특별시 국가기술자격 검정관리위원회 규칙폐지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81.2.12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이창갑 ①

◎ 서울특별시교육규칙제 221호

서울특별시 국가기술자격검정관리위원회 규칙폐지 규칙

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규칙 제 100호 서울특별시 국가기술자격 검정관리위원회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 (81.2.12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당직근무 규칙은 이에 공포한다.

1981.2.12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이창갑 ①

◎ 교육규칙제 222호

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당직근무규칙

제 1조 (목적)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와 교육구청, 사업소 및 각급학교(이하 "기관"이라 한다)의 당직 근무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명령을 받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직 2일 전까지 당직명령자로 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 2조 (적용범위) 당시 근무자에 관하여는 공무원당직 근무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	(1)당직근무자가 전출한 경우에는 후임 견임자가 전임자의 근무일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차임한 날로부터 7일간은 면제한다.
제 3조 (당직근무자의 편성) ①기관 별 당직 근무자는 2인 이상으로 편성한다. 다만, 그 기관의 필요에 따라 수워, 운전원등을 따로 당직 근무자로 명할 수 있다.	②당직근무자중 책임자는 당직 명령을 받은 자중 상위 직급자로 하며, 당직 근무자를 지휘한다. ③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장은 필요에 따라 공무원당직 근무규정 제 8조 제 2항 및 제 3항에 정한 범위와 절차에 의거 당직자를 증감할 수 있으며 여직원은 속직근무에서 제외한다.
제 4조 (당직명령) ①기관장은 일, 숙직별로 구분하여 운번제에 따라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 명령을 행하여야 한다. ②당직 통지는 별지 제 1호 서식의 당직 명령에 의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	④당직 책임자는 당직을 주관하는 부서로 부터 당직근무에 필요한 당직용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 이를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. 다만, 곤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속직 근무자간 인계 인수 하여야 한다.
제 5조 (당직변경 및 유예) ①당직	⑤당직근무자는 수시 청사내외의 순찰을

<p>통하여 자체 시설을 점검하고 화재, 도난, 방지 및 경계를 하여야 하며,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방법, 방화, 기타 보안상태 점검 확인 2. 근무 시간의 임무 근무자의 복무 확인 및 통제 3. 음주,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금지 4. 간소복을 착용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외장 패용 5. 문서의 수발 및 인계와 국기의 계양 및 관리 6. 당직 근무일지 작성 7. 청사내외를 매 시간마다 1회 이상 순찰 8. 당직 근무중 취침금지 다만,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. 9. 당직실내에 부착된 유인물 숙독 10. 기타 당직근무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<p>제 8조 (문서 또는 물품 접수처를) 당직근무자가 문서 또는 물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문서, 전보, 금품등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당직 근무일지에 기재하고 근무 종료후 수반부서 또는 차번자에게 인계 한다. 	<p>다만, 진급을 요하는 내용의 문서나 전보등은 즉시 수신인 또는 관계자에게 전달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. 문서의 내용상 접수시간의 기재를 요하는 문서에는 접수시간을 봉투에 기입하여 당직책임자가 날인한다. 3. 당직자가 공무에 관한 전학률 통화하였을 때에는 당직근무일지에 통화내용을 기입한 후 공문서처리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진급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p>제 9조 (문서물품 발송처리) 당직자가 문서전보 금품을 발송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전보는 그 원안에 발송시각을 기입하고 문서금품을 우송할 때에는 그 원안에 발송 월일·시각을 기입 날이 한 후 문서발송 대장에 기입한다. 2. 1호에 의하여 발송된 문서의 원안은 익일 주관부서 또는 차번 당직자에게 인계한다. <p>제 10조 (비상소집 의무)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 기관장으로부터 비상소집의 명이 있을 때에는 비상연락망에 의하여 즉시 연락을 취하고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</p>
---	--

제 825 호 시

보 1981.2.17 45-7

제 11 호 (당직실의 비품): 당직실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 및 물품을 비치 한다.	7. 순찰시계 8. 각실과의 열쇠 9. 유관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10. 비상용품 11.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서류 및 물품
1. 당직근무일지 2. 당직명령부 3. 직원주소록 4. 직원비상연락망 5. 당직근무규정 6. 비상열쇠보관함	부 칙 (81.2.12) 1.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<별지 제 1호 서식>

당 직 명령 부

기 관	당직월일	일요일	구 분	소 속	직 위	성 명	비 고

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법률고문운영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81.2.12

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이창갑

◎ 교육 규칙 제 223 호

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
법률고문운영 규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관련된 법률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직무) ① 법률고문은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.

1.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(이하 '교육위원회'라 한다)에 대한 법률사항의 지도와 협의에 관한 사항
 2. 교육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수임
 3. 기타 교육감이 위임하는 법률사항
- ② 법률고문은 전항 각호의 직무를

기피하거나 교육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.

제 3 조 (정원) 법률고문은 청원을 7인이내로 한다.

제 4 조 (위촉) ① 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내에 거주하고 교육행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변호사 또는 법률학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된다.

②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 5 조 (회의) ① 교육감은 법률사항을 토의 자문을 반기위하여 법률고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 법률고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전의할 수 있다.

제 6 조 (보수) ① 법률고문에 대해서는 예산법위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전항의 보수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.

부 칙 (81.2.12)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내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의 교직원 수당지급 및 산업체의 교육비 부담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	서울특별시내 산업체의 근로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의 교직원 수당지급 및 산업체의 교육비 부담에 관한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-	---

1981.2.12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이창갑

제 4조(수당지급) 중 제 4항을 삭제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◎ 교육규칙 제 224 호

부 칙 (81.2.12)

서울특별시내 사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의 교직원 수당지급 및 산업체의 교육비 부담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	이 규칙은 1981.1.1부터 적용한다.
--	------------------------

별표 2 특별학급교직원수당지급액 및 지급기준

구 분	지 급 액	지 급 기 준
근무교장	월 50,000 원	1. 교무, 학생주임과 학급 담임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주임교사 수당과 학급 담임수당을 병급할 수 있다.
교감	월 45,000 원	
수당	서무직원 월 35,000 원 교용원 월 25,000 원	2. 강의수당은 실제로 수업을 담당한 강의시간수에 의거 지급하되 특별학급 전담교사에게는 강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주임교사수당	월 10,000 원	
학급 담임수당	월 30,000 원	3. 연구수당은 특별학급 전담교원 (전담양호교사포함)에게만 지급한다.
간의수당	시간당 3,000 원	
연 구 수 당	월 40,000 원	

고

시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34 호

도시계획사업 (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) 시행 허가변경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55 호 (73.4.24)로 사업시행 허가된 도시계획 사업 (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(79.12.10)의 권한위임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을 변경허가 (기간연장) 하였기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2.13

서울특별시장

- 가. 사업시행지 : 구로구 가리봉동 535 번지 일대
- 나.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)
- 다. 면적 : 366,230 평
- 라. 사업시행자 : 한국수출산업공단 이사장 최명현
- 마. 사업기간 : 당초 76.3.1-80.12.31
변경 76.3.1-81.12.31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35 호

도시계획사업 (소매시장) 시행 허가

1. 서울특별시고사 제 507 호 (79.12.11) 및 고시 제 7 호 (80.1.11)로 도시계획시설 (소매시장) 결정 및 지적승인된 강서구화곡동 323-9 외 14 필지 3296 m² (997 평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(79.12.10)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2.16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시행지 : 강서구화곡동 323-9 외 14 필지
2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사업 (소매시장)
명칭 : 강서중앙시장
3. 사업의 규모 : 3,296 m²
(997 평)
4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가. 착수년월일 : 허가 후 7 일
이내
나. 준공예정일 : 착공 후 1 년
이내

제 825 호 시

보 1981.2.17 45-11

5. 사업시행자주소성명 : 강서구화곡동 323-9 광역개발주식회사대표 김한규	10.15)로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전설부 고시 제463호(79.12.10)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6. 위치 및 계획면적도 : 별첨(도면 생략)	
7. 공사설계도면 : 별첨(도면생략)	
◎ 서울특별시고시 제 36 호	
도시계획시설(도로)지적승인	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440 호(79.	1981. 2. 16 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시설(도로)지적승인조서

구분	등급	류별	선호	폭원	연장	기점	종점	비고
기장	소로	2		8	180	구로동 570	구로동 553	폭원확장
변경	중로	3		12	180	"	"	
신설	소로	2	1	8	260	"	" 551	
"	"	2	"	160	"	구로 551	구로 575	
"	"	3	"	150	"	476	" 산 60	
"	"	4	"	120	"	486	" 490	
"	"	5	"	150	"	454	" 458	
"	"	6	"	240	"	420	" 448	
"	"	7	"	160	"	425	" 446	
"	"	8	"	140	"	391	" 708	
"	"	10	"	200	가리봉 2	가리봉 13		
"	"	11	"	200	가리봉 9	"		
"	"	12	"	180	가리봉 92	" 106		
"	"	13	"	100	구로 317	구로 761		
"	"	16	"	30	" 155	" 154		
"	"	17	"	150	" 123	" 125		
"	"	18	"	30	" 123	" 123		

45-12 제 225 호 시

보 1981.2.17

구분	등급	유별	번호	폭원	연장	기 철	종 철	비 고
신설	소로	2	19	8	50%	구로 118	구로 73	
"	"	2	20	8	160	" 118	" 123	
"	"	3	1	6	130	" 597	" 593	
"	"	"	2	"	120	" 512	" 513	
"	"	"	3	"	100	" 706	" 706	
"	"	"	4	"	230	가리봉 25	가리봉 30	
"	"	"	5	"	"	구로동 166	신도림 1063	

○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: 도면생략. 끝.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37 호

도시계획사업 (주차장) 시행변경허가

- 서울특별시고시 제 334호 (78.7.5) 및 동고시 제 348호 (79.7.28)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되고 동고시 제 492호 (79.11.26)로 시행자 명의 변경허가된 지역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의 사업기간 연기원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 계획을 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조와 동법 제 26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호 (79.12.10)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- 관제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 2. 16.

서 울 특 별 시 장

- 가. 사업시행지: 강남구 양재동 539 번지의 25필지
 나. 사업종류 및 명칭: 도시계획사업 (주차장) 시행허가
 다. 사업시행자주소, 성명:
 부산시 동구 대창동 3가 61번
 지(주)천일여객 자동차
 대표: 박 남 수
 부산시 동구 범일동 252-767
 (주)천일정기화물자동차 대표 박남규
 라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
 착공: 79년 11월 20일
 준공예정일: 80년 12월 31일
 변경준공예정일: 81년 12월 31일
 마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
 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이외의 권리
 명세서
 바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토
 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
 의한 관계인의 주소, 성명(생
 략)

제 825 호 시

보 1981.2.17 45-13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38 호

도시계획시설(학교, 도로)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학교, 도로)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63 호(79.12.

10)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경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 2. 17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시설(학교) 지적승인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
신설	신목중학교	강서구 신정동 88-3 일대	15,681	
신설	신목국민학교	강서구 신정동 281-2 일대	10,119	

나. 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적승인조서

구분	등급	류별	폭원	연장	기점	종점	비고
기점	소로	2	8m	98m	신정동 281-48	신정동 281-48	
변경	"	"	"	"	"	"	폐지
기점	"	"	"	132	신정동 88-8	신정동 88-나	
변경	"	"	"	132	"	"	폐지
신설	"	"	6m	98m	신정 281-111	신정동 281-2	

*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(도면 생략)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39 호

아파트지구 개발사업자 지정

1. 건설부 고시 제 131 호(76.8.21)
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256 호
(76.10.2)로 아파트지구 지적승인

된 영동아파트지구(제 3-2주구)

인부에 대하여 주택건설 추진법 제 21조 동법시행령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를 당해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기 고시한다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(주택행정과) 및 강남구청(시민봉사실)

45-14 세 825호 시

보 1981.2.17

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
적인의 열람에 공한다.

1981. 2. 17

서 울 특 별 시 장

○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
내역

가. 사업시행자 : (주)한양주택 배종렬
나. 사업시행구역의 표시 : 강남구
서초동 산 189-1 일원 (아파트지
구 제 3 ~ 2 주구 일부)

다. 사업시행면적 : 7,322.4 평

라. 사업계획개요

• 사업명 : 아파트건립

• 사업규모 : 아파트 25~45평형

312세대

• 사업비 : 11,130,048 천원

• 사업기간 : 1981.2.17 ~

1984. 2. 28

• 관제도면 열람기간 : 81.2.20

~ 81.2.28 (7일간)

•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 (주택행
정파)

강남구청 (시민봉사실)

토 지 조 서

동명	지 번	환지면적	소 유 자	
			주 소	성 명
서초동	산 189-3	323	영등포구여의도동 1-885	(주)한양주택
"	산 189-1	1,617	"	"
채비지	368-3	2,270	"	"
반포동	454-1	(가) 93	종로구화トン동 86	신봉하
"		(나) 250.3	용산구용문동 38	신춘란
"	455-3	223.2	성동구구의동 41	김철웅외 3인
"	454-2	445.6	강남구서초동 651	김도영
"	455-5	368.8	용산구보광동 201-3	원창연
채비지	368-1	1,072.4		서울시
"	368-2	659.1		"
채	10 필지	7,322.4		

제 825 호 시

보 1981.2.17 45-15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40 호

도시계획 고도지구지적고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437 호 (80.12.30.)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 고도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(79.12.10.)

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위치하여 토지소유자는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 2.

서울특별시장

고 도 자 구 조 서

구 분	위 치	연 장	면 적	최 고 한 도
최고고도 지 구	용산구 후암동 30- 한남동 산 10번지	2,700 m	135,000평	순한도로면이하 1.5m (최고고도 제한)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41 호

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지지정

1. 건설부고시 제 131 호 (76.8.21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56 호 (76.10.2.)로 아파트지구 지적승인된 강남구 반포동 일부지역 (제 1 - 3 주구) (목록 : 별첨)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 21 조 동법시행령 제 24 조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였다.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(주택행정과) 및 강남구청 (시민봉사실)에 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언락에 공한다.
-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지정내역

가. 사업시행자 : 한신공영(주)

대표 김형종

나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: 강남구
반포동 266-1 번지 일원
(제 1 - 3 주구) (별첨목록)
3,188.6평

다. 사업계획 개요

- 사업명 : 아파트 전립
- 사업규모 : 아파트 25평형
(분양) 130세대
- 사업비 : 2,925,000 원원
- 사업기간 : 1981.1.33. - 1981.12.31

라. 관계도면의 열람기간 : 81.2.
20 ~ 81.2.28 (7일간)마. 관계도면의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
주택국 (주택행정과)
강남구청 (시민봉사실)

45-16 제 825호

시

보

1981.2.17

동명	지번	총면적	지번급수호	환지면적	소유자
잠원	1-31	670	40 가	93.8	한신공영
"	142-4	1,920	40 아	115.6	"
반포	423	512	40	259.8	"
"	254-2	135		"	"
"	252-4	134		"	"
"	252-3	704	40	738.1	"
"	255-9	156		"	"
"	254-1	6		"	"
"	229-2	455		"	"
"	228-1	20	40	952.2	"
"	234-2	305		"	"
"	233-3	795		"	"
"	261-1	8		한신공영지분 1/2	
"	261-2	87	40	560.4	판악구상도동 154
"	261-3	184			강현무지분 1/2
"	262-3	632			서울특별시
채비지	40-1		40	178.9	
"	43-1		40	212.3	
"	40-3		40	41.5	
				한신공영소유	
				2,475.7	
				반인소유 712.9	
				계 3,188.6	
				한신공영소유 비율	
				17.64%	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42 호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440 호 (79.10. 15.)로 시설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(도로)를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전 설부고시 제 463 호 (79.12.10.)의		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적승 인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 2. 판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경비 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		1981. 2. 18. 서울특별시장

지적승인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장	시점	총점	비고
신설	소로	1	2	10	260m	영등포 618	영등포 602	
		2	32	8	150	도림 157	도림 161	
			31		130	" 77	" 78	
			34		50	영등포 620	영등포 618	
			35		200	" 631	" 620	
			33		260	도림 226	도림 156	
			28		240	신길동 356	신길동 325	
			29		120	" 312	" 347	
			27		130	" 342	" 336	
			25		60	" 405	" 404	
			24		50	" 410	" 415	
			21		130	대림 1050	대림 1057	(구 : 신도림)
			22		260	" 745	" 760	
			30		20	신길 289	" 81	
			23		100	" 410	" 750	

※ (도면생략) 끝.

45-18 제 825 호 시

보 1981. 2. 17

공 고

◎서울특별시 공고제 36호

전기·용·제조업 허가증

전기·용·제조업 허가증

시 행령 제 18 조제 3 호에 의거 전기
용품 제조업 허가증 취소하고 통법
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
같이 공고한다.

1981. 2. 14

서울특별시장

가. 다음

업체명	소재지	대표자	허가번호	조치내용	취소사유
영성전열공업사	성수 2 가 277-68	사외순	1-3-43	허가증	법 제 8 조제 1 항제 4 호
삼화전기산업사	• 1 가 656-392	김종열	가-4-11	"	"
신일전기공업사	• 2 가 273-32	김충현	1-5-9	"	"
삼형정밀공업사	• 2 가 277-50	김기문	1-7-152	"	"

◎서울특별시 공고제 37호

도시계획 사업 (공용의 청사,
도로) 실시계획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28호 (80.1.29)
및 건설부고시제 145호 (78.6.15)
로 각각 시설 결정된 공용의 청사
및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을
시계획을 수립, 인가하고자 도시계
획법 제 25 조 2 항에 따라 공고일
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
시킨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
2회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소
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시행자 : 강남구 서초동 967 일대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도시계획 사업 (공용의 청사 및 도로)
3. 사업의 규모
 - ~ 공용의 청사 : 32,120 평
 - ~ 도로 : 400 평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5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
 - 제 1차 착수 (토지 및 건물보상)
가. 사업착수일 : 81.3
 - 나. 완료예정일 : 82.12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
지수용법 제 4 조제 3 항의 관계인
의 주소, 성명

1981. 2. 16

제 825 호

시

보

1981. 2. 17

45-19

토지조서(구획정리사업지구내)

45-20 제 825 호 시

보 1981.2.17

○ 토지조서 (구획정리사업지구내)

증 전 의 토 지 환					지 예 정 지	
소 재 지	지 번	지 목	면적(평)	구획번호	지 번	면적(평)
강남구서초동	951	답	348	444	951	175.2
"	953	묘지	298	"	953	162.9
"	산182-2	임	462	"	산182-2	300.9
"	952	답	250	"	952	147.8
"	954	전	566	"	954(71)	313
"				"	954(4)	95
"	955	"	396	"	955	316.9
"	956	"	105	"	956	55.1
"	958-4	답	246	"	958-4	128.6
"	958-1	"	196	"	958-1	103
"	958-3	"	202	"	958-3	105.8
"	958-5	"	150	"	958-5	78.4
"	956-2	전	185	"	956-2	97.2
"	산181-2	임	460	445	산181-2	268.6
"	181	"	230	"	산 181	138.9
"	960-1	전	323	"	960-1(21)	190.9
"	960-5	"	173	"	960-5	102.7
"	960-2	"	140	"	960-2(21)	95.4
"	961	"	179	"	961	100.3
"	962-5	답	414	"	962-5	235.7
"	962-1	"	166	"	962-1	94.8
"	971-13	"	283	446	971-13	149.9
"	971-15	"	190	"	971-15	100
"	971-14	"	159	"	971-14	84.2
"	968-2	전	221	"	968-2	164.6
"	969-1	"	153	"	969-1	91.6

제 825 호 시 보 1981.2.17 45-2)

소 유 자	이 해 판 계 일	비 고	
주 소	성 명	주 소	성 명
광주시서구쌍촌동 971의 21	김 막 내		강남구청 암 류
중구남창동 46 의 13	유 익 사		
용산구한남동 1의 17	오정근의 2		
마포구망원동 310의 29	한 기 락		
관악구후석동 173의 39	성 유 원		
"	"		
종로구청진동 221	남 봉 금		
용산구청파동 3 가 119 의 1	오 등 제		
마포구동교동 179 의 35	윤 준 도	강남구청 암 류	
강남반포동주공 A-T 231 동 403 호	최진의의 1		
서대문구연희동 119 의 9	장 재 훈		
마포구동교동 179 의 35	윤 준 보	강남구청 암 류	
용산구청파동 3 가 119 의 1	오 등 제		
영등포구여의도동 1-45 시 범 APT 16 동 91 호	정옥진의 3	경기도시흥군소래면신천리 98 의명환	청 구 권 가 능 기
"	"	"	"
서대문구녹번동 79 의 3	이 상 근		
"	"		
성북구삼선동 1 가 144 의 2	전 흥 익		
강남구서초동 986 의 2	이 대 섭		
강남구반포동 536	윤 태 임		
"	"		
성북구성북동 75 의 24	유명규의 2	강남구청 암 류	
마포구합정동 101 의 3	안분준의 3		
서대문구북아현동 1 의 298	심 상 기		
마포구신수동 309	김재철의 1		
마포구연남동 365 의 23	양 정 자	강남구청 암 류	

45-22

제 825 호

시

보

1981.2.17

종 전 의 토 지				환 치 예 치		
소 재 지	지 번	지 목	면적(평)	구획번호	지 번	면적(평)
강남구서초동	969-2	전	152	446	969-2	91.2
"	962-6	답	305	"	962-6	173.4
"	968-1	전	180	"	968-1	124.2
"	산176-1	임	750	"	176-1	403.4
"	산176-21	"	570	447	산 176-21	311.2
"	산174-1	"	403	"	산 174-1	235.4
"	산174-3	"	395	"	산 174-3	224.4
"	987-10	배	192	"	987-10	131.3
"	987-2	"	39	"	987-2	24.3
"	987-3	"	58	"	987-3	57.2
"	987-4	"	88	"	987-4 (7H)	55.8
"	987-6	"	19	"	987-6	
"	1013-3 8)	답	142 130	703	1013-3 8)	140
"	1013-14	"	262	"	1013-14	135
"	1013-15	"	261	"	1013-15	134.4
"	산174-7	임	182	702	산 174-7	101.5
"	산172-3	"	1,006	"	산 172-3	488.5
"	산170-6 7)	"	17 290	"	산 170-6 7)	168.5
"	산181-3	"	840	450	산 181-3	496.5
"	960-3	전	512	"	960-3	346.5
"	962-2	답	984	"	962-2(4H)	172.1
				"	962-2(7H)	442

제 825 호 시 보 1981.2.17 45-23

소 유 자	이 해 관 계 인	비 고
주 소	성 명	주 소 성 명
성동구구의동 63의 26	신흥철외 2	
강남구반포동 536	윤태임	
동작구동작동삼호 APT 11동 607호	권준안	
강동구잠실 2동 APT 502동 803호	강철중외 2	
성동구금호동 2가 625의 4	김인기	
강남구입구정동 193-3현대 APT 85동 404호	신재 휴	충구충무로 4가 126의 1 아세아지상권 종합금융 균저당권
서대문구충장로 2가 40	이재근	
강남구서초동 987의 2	허승	
관악구흑석동 산 91	송갑칠	
용산구이촌동 301의 160	권종근외 1	
구로구개봉동 361의 15	변매자	
강남구반포동 23	김정식	산남구입구정동 193의 3 강남구청화재 청구권 가동기
용산구원효로 4가 118의 28	현재혁외 1	
서북구성북동 14의 16	김문선외 2	
서대문구연희동 200의 28	정규삼	
	국	
영등포구여의도동 1-45시범 APT 16동 91호	정옥진외 3	경기도시흥군소래면신천리 98 최명환 창구전도기
중구신당동 349의 207	함영훈	
서대문구충정로 2가 40	이재근외 2	
서대문구충정로 2가 99의 15	이형근외 2	

45-24 제 825 호 시 보 1981.2.17

송 건 의 토 지				환 지 예 경 지		
소 재 지	지 번	지 목	면적(평)	구획번호	지 번	면적(평)
강남구서초동	962-9	답	300	450	962-9	183.8
"	962-8	"	227	"	962-8	138.6
"	962-3	"	189	"	962-3	115.3
"	962-7	"	205	"	962-7	125
"	966	"	442 (1,500)	449	966	251.7
"	산 176-3	임	400	"	산 176-3	211.3
"	963	답	1,696	451	963	1,049.2
"	산 176	임	490	"	산 176	307.6
"	965	답	485	"	965	692
"	964	건	634	"	964	
"	987-1	대	75	447	987-1	69.7
강남구반포동	403-1	건	278	444	서초동 403-1	82.2
"	426-2	"	224	445	" 426-2	54.2
"	394-2	"	668	445	" 394-2	156.7
"	388-1	"	310	447	" 388-1	85.2
"	403-2	"	719	703	" 403-2	102
"	406-2	"	306	"	" 406-2	5.8
"	401-2	"	491	"	" 401-2	127.5
"	407-2	"	147	702	" 407-2	75.5
"	385-23	"	103	449	" 385-23	52.7
"	385-29	"	97	"	" 385-29	52.8
"	산 83-17	임	100	"	" 산 83-17	69.5
"	395	건	459	446	" 395	124.5
강남구서초동		채비지		444	444-1	98.8
"		"		445	445-1	60.2

제 825 호 시 보 1981.2.17 45-25

소 유 자	이 해 관 계 인	비 고	
주 소	성 명	주 소	성 명
성동구 광장동 산 21 위커힐 APT 12 동 404	최운지		
강남구 서초동 1072	박춘산		
관악구 노량진동 205의 97	신명철		
성동구 광장동 산 21 위커힐 APT 12 동 404호	려운지		
중구 남창동 46 의 13	유익상		
중구 북정동 11	이충근외 1		
중구 신당동 432 의 778	이선중외 1		
강동구 잠실 2동 502 의 803	강철중외 2		
강남구 서초동 986	이영록	관악구 흑석동 29 의 41	홍남예 가등기
" " 986 의 1	이대성	강남구 청악동	한류
용산구 이촌동 301 의 92	박상근		
강남구 압구정동 산 16 의 26	엄금순		
중구 신당동 429 의 17	허희철		
마포구 성산동 140 의 3	차애옥외 1		
강남구 반포동 466	둔희선		
" " 486	김주익		
" " 486	"		
강남구 서초동 63 의 10	박준화외 2		
서대문구 연희동 151 의 86	장삼구	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136 의 1	세신실업 근자당
강남구 방배동 345 의 3	손인수	강남구 양재동 산 17 의 8	남부단위농지상권 근저당권
용산구 갈월동 6 의 5	김먹기		
마포구 연남동 570 의 16	권구진외 4		
서울특별시			
강남구 압구정동 산 16 의 26	엄금순		

1290

45-26 제 225 호 시

보 1991.2.17

종 전 의 토 지				환 지 예 정 지		
소 재 지	지 번	지 목	면적(평)	구획번호	지 번	면적(평)
강남구 서초동		체비자		445	445-2	104.2
"				446	446-1	148.3
"				"	446-3	64.1
"				450	450-2 (가)	74
"				"	450-2 (나)	78
"				"	450-2 (다)	100.3
"				"	450-1	259.7
"				449	449-1	90.5
"		체비자		451	451-1	208
"		공원		449		300
"		체비자		444	444-2 (가)	56.7
"	산 174-4	임	273	703	산 174-4	145.5

○ 토지조서 (일반지구)

소 재 지	지 번	지 목	면적 (평)
강남구 서초동	967 - 89	대	225
"	" - 6	"	236
"	" - 93	"	289
"	" - 5	"	612
"	" - 94	"	247
"	" - 85	"	231
"	" - 86	"	235

제 825 호 시 보 1981. 2. 17 45-27

소 유 자	이 해 관리인			
주 소	성 명	주 소	성 명	비 고
강남구 서초 4동 1202	차민도			
성북구 삼선동 5가 73	최한갑			
· 장위동 219의 189	권정자			
강남구 역삼동 산 75의 44	임종서			
"	"			
동작구 동작동 307 반포 APT 98동 305호	홍기성			
성동구 송정동 73의 609	김무웅외 3			
서울특별시	.			
동작구 동작동 307 반포 APT 3동 304호	조낙현외 1			
서울특별시				
성북구 보문동 1가 3의 1	박용환			
· 14의 16	김문섭외 2			

소 유 자	이 해 관리인			
주 소	성 명	주 소	성 명	비 고
관악구 봉천동 961의 3	박영택			
· 상도동 159의 78	이진원			강남구 청 압류
영등포구 여의도동 1-893	남일규			
한양 A.P.T D동 301호				
강남 압구정동 193-3 현대 A.P.T 76동 1004호	김성진	중구 남대문로 2가 111의 1	한국상업지상권 은행	지상권, 균저당권
종로구 명륜동 1가 7의 1	양승학			
동대문구 회기동 60의 65	윤인자			
중구 회현동 1가 산 1의 2	김영희			

45-28 제 825 호 시

보 1981.2.17
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㏊)
강남구 서초동	967 - 81	대	261
"	967 - 2	"	231
"	967 - 7	"	731
"	산 176-22	임	3,570
"	967 - 1	대	490
"	967 - 83	"	499
"	967	"	430
"	968 - 6	전	830
"	968 - 5	"	579
"	968 - 3	"	1,630
"	산 16-2	임	5,157
"	968 - 4	전	430
"	967 - 14	대	314
"	967 - 79	"	549
"	967 - 11	"	284
"	967 - 40	"	238
"	967 - 39	"	205
"	967 - 8	"	863
"	산 172-1	임	9,893
"	산 174-2	"	5,431
"	967 - 90	도로	61
"	산 176-20	임	4,542
"	967 - 91	대	313

제 825 호 시 보 1981.2.17 45-2°

소유자	이해관계인	비고
주 소	주 소	
영등포구 여의도동 1-893 한양 APT 다동 703호	전희령	
영등포구 여의도동 1-123 광장터 A.P.T 10동 505호	허돈	
강동구 천호동 167 의 46	이찬재외 2	
봉산구 갈월동 6 의 5	김덕기	
중구 회현동 1 가산 1 의 2	이내해	죽우 남내문로 2가 10 의 1 서울신타운
성북구 안암동 3가 78 의 15	이갑열외 3	지상권
중구 남창동 46 의 13	유익상	
마포구 신수동 309	김재철외 1	
성동구 광장동 산 21 워커힐 A.P.T 32동 502호	김영삼	
강남구 서초동 986	이경록	강남구 청담로
• 역삼동 산 76 의 87	이종욱외 1	
성동구 광장동 산 21 워커힐 A.P.T 32동 502호	김영삼	
성북구 장위동 246 의 173	문장진	
영등포구 여의도동 1-893	이종식	
한일 APT E동 411호		
관악구 신림동 50 의 8	마규화	
서대문구 연희동 115 의 38	김종배	
도봉구 수유동 478 의 12	김우현외 3	
동작구 동작동 307	신연환외 2	
서대문구 연희동 200 의 28	정규삼	
성북구 성북동 14 의 16	김문설외 2	
• 58 의 3	이복만외 3	
서대문구 칠현동 20 의 7	한봉식	
강남구 서초동 967 의 91	최동수	봉산동부 이촌동 300 의 191 한강엔센 APT 28동 404호 경진석 소유권가등기 중구 을지로 1 가 50 티인스먼저 티온 티온 서당권

45-30 제 825 호

시

보 1981.2.17

소재지	지번	지독	면적(㎡)
강남구 서초동	967-92	대	284
"	" - 4	"	678
"	" - 84	"	175
"	" - 87	"	175
"	" - 80	"	231
"	" - 88	"	176
"	" - 78	"	400
"	" - 75	"	179
"	" - 76	"	175
"	" - 65	"	152
"	" - 64	"	169
"	" - 10	"	258
"	" - 58	"	152
"	" - 57	"	195
"	" - 50	"	175
"	" - 62	"	172
"	" - 48	"	33
"	" - 77	"	264
"	" - 67	"	165
"	" - 60	"	169
"	" - 63	"	169
"	" - 73	"	188
"	" - 69	"	188
"	" - 30	"	188
"	" - 37	"	192
"	" - 72	"	182
"	" - 41	"	112
"	" - 66	"	50

제 825 호

시

1921.17

1921.17 45-31

45-32 제 825 호 시

보 1981.2.17
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 (m ²)
강남구 서초동	967 - 55	대	205
"	" - 51	"	162
"	" - 34	"	195
"	" - 53	"	195
"	" - 54	"	195
"	" - 32	"	112
"	" - 74	"	66
"	" - 35	"	76
"	" - 70	"	102
"	" - 9	"	238
"	" - 82	"	264
"	" - 52	"	162
"	" - 61	"	185
"	" - 71	"	185
"	" - 44	"	162
"	" - 24	"	251
"	" - 3	"	175
"	" - 29	"	261
"	" - 56	"	195
"	" - 59	"	159
"	" - 25	"	169
"	" - 27	"	152
"	" - 43	"	169
"	" - 68	"	165

* 전부 면적은 평방미터(m²)로 표기되었습니다.

○ 건물조서

소재지	지번	전물면적(평)	소유자		
			주	소	성명
강남구 서초동	967-50	28.6	서울특별시		
"	" - 62	23.87	"	"	"

湖 825 立

시

旦 1981.2.17 45-33

45-34 제 825 호

서

보 1981.2.12.

소재지	지번	전용면적 (평)	소유자	
			주	성명
강남구서초동	967-48	49.88	서울특별시	
	-77			
"	967-67	23.87	"	
"	967-60	23.87	"	
"	967-63	23.87	"	
"	967-73	28.6	"	
"	967-69	23.87	"	
"	967-30	28.6	"	
"	967-37	23.87	"	
"	967-72	23.87	"	
"	967-41	23.87	"	
	-66			
"	967-55	28.6	"	
"	967-51	23.87	"	
"	967-34	28.6	"	
"	967-53	28.6	"	
"	967-54	23.87	"	
"	967-32	23.87	"	
	-74			
"	967-35	23.87	"	
	-70			
"	967-9	28.6	"	
"	967-82	38.65	"	
"	967-52	28.6	"	
"	967-61	23.87	"	
"	967-71	28.6	"	
"	967-44	23.87	"	
"	967-24	28.6	"	
"	967-3	45.87	"	

제 825 호 시 보 1931.2.17 45-35

이 해 관 계 인			부 기 고
주	소	성 명	

1295

45-36 제 825 호

시

보 1981.2.17

소재지	지번	건물면적 (평)	소유자	
			주소	성명
강남구서초동	967-29	65.48	서울특별시	
"	967-56	28.6	"	
"	967-59	23.87	"	
"	967-25	28.6	"	
"	967-27	23.87	"	
"	967-43	28.6	"	
"	967-68	23.87	"	
"	967-88	26.07	용산구이태원동 176 의 2	이영국
"	967-58	23.87	강남구서초동 967 의 58	최정래
"	967-57	28.6	성북구정릉동 402 의 166	권영모
"	967-75	28.6	강남구서초동 967 의 75	장근진
"	967-84	45.53	경북봉화군소천면대현리 82	예병길
"	967-76	28.6	강남구서초동 967 의 76	오희덕
"	967-64	23.87	" 967 의 64	전형택
"	967-65	23.87	" 967 의 65	박봉진
"	967-78	59.37	" 967 의 78	박한영
"	967-4	124.4	종로구명륜동 1 가 7 의 1	양승학
"	-94			
"	967-92	54.91	강남구서초동 967 의 92	김손영
"	967-91	48.36	" 967 의 91	최동수
"	967-80	46.35	" 967 의 80	이경희
"	967-10	49.63	" 967 의 10	이근달
"	967-87	43.56	" 967 의 87	조남희
"	987-1	24.79	" 987 의 1	이대성
"	987	11.45	" 987	이복남의 1
"	987-3	7.01	관악구흑석동 산 91	송갑철
"	987-10	8.88	서대문구충정로 2 가 40	이재근

제 825 호 시 보 1981.2.17 145-37

이 해 관 계 인		비 고
주	소	
중구 태평로 1가 61 동 1	한국주택은행	근지당권
중구 태평로 1가 61 의 1	"	"
중구 소공동 76	한국주택은행 한일은행	"
중구 남대문로 2가 130	한일은행	"
중구 을지로 1가 50 용산구 동부이촌동 300 외 101 한강맨션 APT 28동 404호	체이스맨해튼은행 정진석	청구권 가동기
중구 을지로 1가 50	체이스맨해튼은행	근저당권
중구 중무로 1가 53 외 1	한일은행	근저당권
	강남구청	합류

45-38 제 825 호 시

보 1981.2.17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38 호 KS 표시허가취소처분공고 공업표준화법 제 2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 허가를 취소	처분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. 1981. 2. 16.
	서울특별시장

1. 허가번호	제 1001호	제 1002호
2. 허가일자	74.11.28	좌 동
3. 제조업체	(주) 신명전기	좌 동
4. 소재지	서울영등포구 양평동 5가 11	좌 동
5. 대표자	김 회복	좌 동
6. 규격번호	KSC4202	KSC4204
7. 품명	저압 3상 유도전동기 (일반용)	단상 유도전동기 (일반용)
8. 종류등급	200 V 4극 E종 보통형 밀폐형 0.2, 0.4, 0.75, 1.5, 2.2, 3.7kw	100 V 4극 A종 분상기동형 개방형 0.2kw 100 V 및 220 V 4극 A종 커먼 서기동형, 개방형 0.4, 0.75kw 좌 동
9. 취소사유	자진 반납	
10. 취소일자	81.2.16	81.2.16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39 호 도시계획사업 (주차장) 일부준공공고	공사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조 2. 빛 건설부고시 제 463호 (79.12.10)에 의거 이를 공고 한다. 2.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청 강남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옹사실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34 호 (78.7.5) 및 동고시 제 348 호 (79.7.28)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되고 동고시 제 492 호 (79.11.26)로 시행자 명 의 변경허가된 지역에 대하여 일부	1981. 2. 16. 서울특별시장

제 825 호

시

보 1981.2.17. 45-39

1. 사업시행자 : 서울 강남구 양재동
539 의 25 필지
2. 사업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
(주)차장) 신설
3. 도시계획사업시행자 : (주)천일여객자
동차 대표 박남수
(주)천일정기화물자동차 대표 박남수
4. 사업기간 : 1979.10.20 ~
1980.12.31
5. 사업시행면적 : 26,142 ㎡ (7,908坪)
6. 금화순공면적 : 24,302 ㎡ (7,351坪)
7. 준공도면 : 생략

◎ 서울특별시 공고 제 40 호

전기·용품제조업 허가증

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 8 조에 의
거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를 취소하
고 동법 제 26 조 규정에 의거 다
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81. 2. 16

서울특별시장

다 음

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사업구분	허가번호	취소사유
동부 전업사	구지영	동래운장안동 148-4	배선기구류	가-3-22	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 24 조 위반

◎ 서울특별시 공고 제 41 호

전기·용품제조업 허가증

같이 취소하고 동법 제 26 조에 의
거 이를 공고한다.

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 4 조에 의
한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를 다음과

서울특별시장

다 음

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허가번호	제조구분	취소사유
태한전선 공업사	이강술	가리봉동 305-1	1-7-71	전열기구류 제조업	전기용품안전관리 법 제 24 조 위반
현대전기 공업(주)	이도일	가리봉동 산 70-4	1-5-52	소형단상 변압기 류 제조업	*

46-40 제 825 호 시

보 1981.2.17

◎서울특별시 공고제 42 호

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

전기용품 제조에 허가를 다음과 같이 취소하고 동법 제 26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.

1981.1.

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 4조에 의한

서울특별시장

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허가번호	제조구분	취소사유
금성한사	김창술	구로 12-9	1-7-105	전열기구류 제조업	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 7조위반
금성전기	윤정언	동산 603-11	1-5-36	소형단상 압기류제조업	
현대산업	백권수	구로 182-6	1-8-30	전동력용융 기구류제조업	

◎도봉구공고제 86 호

1981.2.13.

도봉구청장

공인개작공고

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장직인 및 재인을 계약 사용 승인하였기 동조제 9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.

- 개인 대상동: 미아 1, 3, 4,
수유 1, 상문 1,
공릉 1, 2동, 중계동
- 사용개시일자: 81.2.20
- 개인공인인명: 별첨 (공인개작
인명)

제 825 호 시인의 인증 보 : 1981.2.17 45-41

시인의 인증			
인명	(도)	인명	(진)
공인명	미아제 1 동장직인 책인	공인명	미아제 1 동장직인 책인
인명		인명	
공인명	미아제 3 동장직인 책인	공인명	미아제 3 동장직인 책인
인명		인명	
공인명	미아제 4 동장직인 책인	공인명	미아제 4 동장직인 책인

5-42

제 825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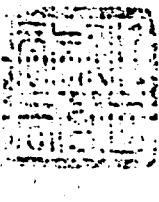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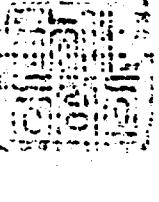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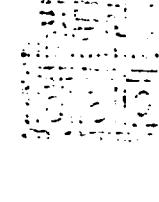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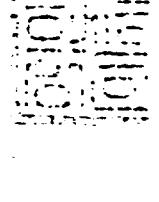
시

날 1981.2.17

	(수)	인	(인)
91 영			
수인명 수유체 1 통장직인 제인	공인명 수유체 1 통장직인 제인		
91 영			
공인명 상문체 1 통장직인 제인	공인명 상문체 1 통장직인 제인		
91 영			
공인명 상문체 2 통장직인 제인	공인명 상문체 2 통장직인 제인		

제 825 호 시

보 1981.2.17. 545-43

인	(수)	인	(전)
영		영	
공인명	공통체 1 동장직인 제 1호	공인명	공통체 1 동장직인 제 1호
인		인	
영		영	
공인명	공통체 2 동장직인 제 1호	공인명	공통체 2 동장직인 제 1호
인		인	
영		영	
공인명	증체동장직인 제 1호	공인명	증체동장직인 제 1호

보 1981.2.17

사 령

◎ 1981년 2월 16일 종로구 사회과 지방행정사무관 유경상 행정사무관에 임함. 행정조정실 근무를 명함. 대통령	◎ 1981년 2월 15일 마포구보건소 이수자 지방간호기사보 강남구보건소 고승남 지방간호기원보사보 서대문구보건소 송가준 지방간호기원보사보 영등포병원 신충웅 지방약무기사보사보 아동병원 고창선 지방약무기사보사보 강남병원 배순애 지방약무기사보사보 아동병원 임정초 지방약무기사보사보 보건연구소 청관 지방보건연구사보 보건연구소 박형언 지방보건연구사보
◎ 1981년 2월 18일 도로관리과 이해율 지방행정서기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 2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. 도로관리과 조동현 지방행정서기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 2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.	
도로관리과 심상율 지방행정서기보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 2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. 서울특별시장	
◎ 1981년 2월 20일 전남승주군농산과 윤경채 지방행정주사 서울특별시 천임을 명함.	

제 825 호 시

보 1951.2.17 45-35

영등포구보건소 지방보건기원보시보 (r선)	이 중 렉	온정구 지방화공기원보시보	김 청 복
강동구보건소 지방보건기원보시보 (r선)	김 봉 자	지하철운영사업소 지방통신기사보시보	김 중 완
강동구보건소 지방보건기원보시보 (병리)	홍 원 향 서울특별시장	지하철운영사업소 지방통신기사보시보	하 병 호
◎ 1951년 2월 20일 도시가스사업소 지방화공기사보시보	장 운 석	지하철운영사업소 지방통신기사보시보	김 승 훈
김포수원지 지방화공기사보시보	구 총 서	남부수도관리사업소 지방토목기원보시보	송 상 영
동작구 지방화공기사보사보	민 잡 석	◎ 1951년 2월 23일 체신부우정국국내우편과 행정주사	임 석 간
연로시험소 지방화공기사보시보	이 상 운	지방행정주사에 입한.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 민방위과 근무를 명함.	서울특별시장
상동구 지방화공기사보시보	성 인 용		
선유수원지 지방화공기원보시보	최 한 순		
서대문구 지방화공기원보시보	조 성 판		